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세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53

발의연월일: 2019. 4. 5.

발 의 자: 김세연·김성찬·김영우

정용기 · 김기선 · 윤종필

나경원 · 김광림 · 김승희

이은권 · 정우택 · 박대출

정동영 · 경대수 · 오신환

이장우・이명수・송언석

유재중 · 송석준 · 이완영

박완수 · 이채익 · 김한표

박맹우 • 백승주 • 정성호

여상규 · 이만희 · 장석춘

김재경 • 권성동 • 김상희

이용호 의원(34인)

제안이유

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,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4조의2 삭제).
- 나. 간호사의 면허 및 실태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7 조 삭제 등).
- 다.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 60조의3 삭제).
- 라.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, 업무범위 및 한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78조, 제80조,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간호법안」(의안번호 제196 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간호사를"을 "「간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목의" 를 "「간호법」 제13조 각 호의"로 하며,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. 제4조제4항 중 "제7조"를 "「간호법」 제5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

본문 중 "제80조에"를 "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에"로 한다.

제4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"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"를 "국가시험과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"를 "제5조 및 제6조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"를 "제5조 및 제6조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의료인의 종별로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를 구분하여"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제80조에"를 "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에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의료인이나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"으로, "조산 또는 간호업무나"를 "조산업무나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, "간호기록부, 그 밖의"를 "그 밖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

료인이나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제3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는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 중 "의료인이나"를 각각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료인에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에"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"의료인이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가"로, "또는 간호사 명칭이나"를 "명칭이나"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한의사·조산사 및 간호사는"을 "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, "한의사회·조산사회 및 간호사회"를 "한의사회 및 조산사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 한다.

제40조제2항 본문 중 "진료기록부등을"을 "진료기록부등 및 「간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록·보존하고 있는 간호기록부를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진료기록부등의"를 "진료기록부등 또는 간호기록부" 로 한다.

제58조의2제3항제1호 중 "의료인 단체 및"을 "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 사회·조산사회,"로, "의료기관단체에서"를 "의료기관단체 및 「간호 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회에서"로 한다.

제60조의3을 삭제한다.

제61조제1항 전단 중 "조산기록부·간호기록부 등"을 "조산기록부 등"으로 한다.

제66조제4항 중 "의료인이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가"로 한다.

제66조의2 중 "의료인이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가"로 한다.

제78조ㆍ제80조ㆍ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85조제1항 중 "의료인의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의"로 한다.

제92조제3항제3호 중 "진료기록부등을"을 "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의료인) ① 이 법에서 "의	제2조(의료인) ①
료인"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	
면허를 받은 의사·치과의사·한	
의사·조산사 및 <u>간호사를</u> 말한	
다.	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를
	<u>.</u>
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	②
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	
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	
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	
명을 가진다.	<u>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간호사는 <u>다음 각 목의</u> 업무	5 <u>「간호법」 제13조</u>
를 임무로 한다.	<u>각 호의</u>
가.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	<u><삭 제></u>
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	
및 요양을 위한 간호	
나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	<u><삭 제></u>
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	
<u>보조</u>	
다.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	<u><삭 제></u>
육·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	
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, 그	

<u>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보건활동

라.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 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 한 지도

제4조(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제 의무) ① ~ ③ (생 략)

④ 의료인은 제5조(의사·치과의 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), 제6조 (조산사를 말한다) 및 <u>제7조(간</u> 호사를 말한다)에 따라 발급받 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 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,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,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

<삭 제>

114소(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상의
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호법」 제5조
<u>.</u>
⑤
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에

록 지시·감독하여야 한다. 다만, 응급의료상황, 수술실 내인경우,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제4조의2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 공 등) ①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 사,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(이하이 조에서 "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"이라 한다)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간호·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간

⑥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- 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" 이라 한다)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, 운영 등 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
- ⑤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 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 호·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·확

대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 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호사 면허)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 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- 1.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전문대학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]을 졸업한 자
-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 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 사 면허를 받은 자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 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

<삭 제>

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본다.

제9조(국가시험 등) ① 의사·치과 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 간호 사 국가시험과 의사·치과의사· 한의사 예비시험(이하 "국가시 험등"이라 한다)은 매년 보건 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- 제11조(면허 조건과 등록)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 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제5조부</u> <u>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</u>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 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<u>의료인</u> <u>의 종별로</u> 따로 작성·비치하여 야 한다.

제9조(국가시험 등) ① <u>국가시험</u> <u>과</u>
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세11조(면허 조건과 등록) ①
<u>제</u> 5조 <u>제</u> 5조 및 제6조에
 ②제5조
<u>및 제6조에</u>
,
③ 의사· 최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를 구분하여

- ④ (생략)
- 제12조(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)
 - ①·② (생 략)
 -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 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,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「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 는 사람을 폭행·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(정보 누설 금지) ① <u>의료</u> 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·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·검안서·증명서 작성·교부 업무, 제18조에 따른 처방 전 작성·교부 업무,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·사본 교부 업무,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·보관·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)
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「간호법」 제2조</u>
<u>제3호에</u>
제19조(정보 누설 금지) ① <u>의사·</u>
<u>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</u>
<u>조산업무나</u>

② (생략)

- 제22조(진료기록부등) ① 의료인 전은 각각 진료기록부, 조산기록부, <u>간호기록부</u>,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(이하 "진료기록부등"이라 한다)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,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서명하여야 한다.
 -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 자는 진료기록부등[제23조제1 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(電子 醫務記錄)을 포함하며, 추가기 재·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 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·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 다. 이하 같다]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 여야 한다.
 - ③ <u>의료인은</u>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·수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•
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진료기록부등) ① <u>의사·치</u>
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는
<u>그 밖의</u>
② <u>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</u>
사 또는
③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
<u>사는</u>

제23조(전자의무기록) ① <u>의료인</u> 저 <u>이나</u>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록부등을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(이하 "전자의무기록"이라 한다)로 작성·보관할 수 있다.

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 전하게 관리·보존하는 데에 필 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③ (생 략)

④ <u>의료인이나</u> 의료기관 개설 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 재·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 다.

제25조(신고) ① <u>의료인은</u> 대통령 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 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

•
제23조(전자의무기록) ① <u>의사·치</u>
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
② <u>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</u>
<u>사 또는</u>
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</u>
사 또는
제25조(신고) ① <u>의사·치과의사·</u>
<u>한의사 및 조산사는</u>

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 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 니한 <u>의료인에</u>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- ③ (생략)

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

- ① (생략)
- ② <u>의료인이</u> 아니면 의사·치과 의사·한의사·조산사 <u>또는 간호</u> <u>사 명칭이나</u> 이와 비슷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③ ④ (생 략)

제28조(중앙회와 지부) ① 의사· 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및 간 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 회·조산사회 및 간호사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를 각각 설립 하여야 한다.

- ② (생 략)
-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

②
<u>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</u>
<u> 조산사에</u>
·
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
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</u>
<u>산사가</u>
<u>명칭이나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중앙회와 지부) ①
<u>한의사 및 조</u>
산사는
한의
사회 및 조산사회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3
의사·치과의사·한
1 1 1 1 1 5

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<u>의사 및 조산사는</u> 되며,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------한다.

④ ~ ⑧ (생 략)

- 제30조(협조 의무) ①·② (생략)
 -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제40조(폐업·휴업 신고와 진료기 록부등의 이관) ① (생 략)
 -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기록·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. 다만,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.

<u> 의사 옷 조건사는</u>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30조(협조 의무) ①・② (현행
과 같음)
③ <u>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</u>
<u>산사는</u>
<u>.</u>
제40조(폐업·휴업 신고와 진료기
록부등의 이관) ① (현행과 같
<u>o</u>
②
진료기록
부등 및 「간호법」 제18조제2
항에 따라 기록·보존하고 있는
간호기록부를
<u>신오기타기</u>
,
_) _ , _ , _ , _ , _ , _ , _ , _ , _ , _
<u>진료기록부</u>
<u>등 또는 간호기록부</u>

- ③ ~ ⑤ (생 략) 제58조의2(의료기관인증위원회) 제 ①·② (생 략)
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 지부차관으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제28조에 따른 <u>의료인 단체</u>
 및 제52조에 따른 <u>의료기관</u>
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 - 2. ~ 5. (생 략)
 - ④·⑤ (생 략)
- 제60조의3(간호인력 취업교육센 턴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·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 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 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지역별, 의료기관별 간호인

 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

H58조의2(의료기관인증위원회)
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.</u>
1의사회·치과
의사회·한의사회·조산사회,
의료기관단체

및 「간호법」 제23조제1항에

따른 간호사회에서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2. ~ 5. (현행과 같음)
 ④·⑤ (현행과 같음)
 <삭 제>

- 2.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]

 절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
- 3.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
- 4.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
- 5.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·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 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취업교육

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61조(보고와 업무 검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료법인,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,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,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·조산기록부·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있다. 이 경우 의료법인,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 ②・③ (생략)

제66조(자격정지 등) ① ~ ③ 저 (생 략)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의료인이</u>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 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 ⑤・⑥ (생 략)
 ⑤・⑥ (현행과 같음)

 제66조의2(중앙회의 자격정지 처
 제66조의2(중앙회의 자격정지 처

세61조(보고와 업무 검사 등) ①
<u>조산기록부 등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세66조(자격정지 등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④ <u>의사·치과</u>
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가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에CCス이9/즈아히이 기겨저기 뭐

분 요구 등)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8조(전문간호사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

-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한다.
- 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 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 사 자격이 있는 자
-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

분 요구 등)		
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	및	조산
사가		
<삭 제>		

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.

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, 자 격 기준, 자격 시험, 자격증, 업 무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(간호조무사 자격) ① 간호 〈삭 제〉 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자격 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 조를 준용한다.

- 1.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 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간호조 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(간호 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 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

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"라 한다)으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국·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

- 3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
 서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
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
 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
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
 한 사람
- 5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

- 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6.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·평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·방식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 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·자격인정, 제2항에 따 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·평가, 제4항에 따른 자격 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 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의2(간호조무사 업무) ① | <삭 제>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 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 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 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.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 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의3(준용규정) 간호조무사 <삭 제> 에 대하여는 제8조, 제9조, 제1 2조, 제16조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, 제23조, 제59조제1항,

제61조, 제65조, 제66조, 제68조, 제68조, 제83조제1항, 제84조, 제85조, 제87조, 제88조, 제88조의2및 제91조를 준용하며, 이 경우 "면허"는 "자격"으로, "면허증"은 "자격증"으로 본다.

제85조(수수료) 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,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,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.

② (생략)

제92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제40조제1항(제82조제3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

제	85조(수수료) ①
	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
	사의
	② (현행과 같음)
제	92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	3
	1.・2. (현행과 같음)
	3
	진료기록

록부등을 이관(移管)하지 아 부등 및 간호기록부를---니한 자 4. ~ 8. (생 략) ④ (생 략)

4. ~ 8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